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0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20일

발 의 자 : 조규영 의원(1명)

찬 성 자 : 김광수(도봉), 김구현, 김기만,
김혜련, 문상모, 문형주, 신건택,
이상묵, 이성희, 이윤희, 이혜경,
한명희 의원(12명)

1. 제안이유

서울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또한 노인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8조)
-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9조, 10조,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_있

고,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
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
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본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실태 조사),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센터의 기능)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2016년부터 비용 발생 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장기요양지원센터는 기설치 2개소와 2016년부터 2개소씩 5년간 추가 설치하여 총 12개소 설치 가정
 - ※ '16년에 설치할 2개소의 운영비는 '1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2021년 이후 서울시 전체 자치구(25개소) 설치 및 운영하는 추계비용은 붙임자료 참조
- 장기요양지원센터 비용요소 중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횟수는 매 3년 마다 1회 실시 전제 (추계기간 중 2회 실시)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3,100,60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제6조)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제6조, 제9조, 제10조)	749,772	1,531,264	2,345,766	3,194,616	4,079,190	11,900,608
	실태조사(제5조)	50,000	-	-	50,000	-	100,000
	소계(b)	1,019,772	1,751,264	2,556,576	3,464,616	4,299,190	13,100,608
총비용(b-a)		1,019,772	1,751,264	2,556,576	3,464,616	4,299,190	13,100,608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 1)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조례안 제6조, 제9조, 제10조)
-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제5조)

나. 방법

- 1) 어르신 복지과 사업계획 자료 및 은평구 보조금 정산서를 참고하여 추계
- 2) 추계기간 중 매년 비용 증가분은 최근 3년간 상승률('13년~'15년)의 산술평균값 적용('15년 복지정책과 소규모 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조사자료 준용)
 - ※ 비용은 2년차부터 최근 3년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과 운영비 상승률 반영하여 추계(인건비 상승률 2.8%, 운영비 2.3%)
- 3)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운영비 추계는 '15년 기설치 운영 중인 은평돌봄센터 실 사례 준용
- 4)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을 전제로 비용추계

2. 추계상세

가. 전제

- 1)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2) 2016년부터 비용 발생 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3) 장기요양지원센터는 기설치 2개소와 2016년부터 2개소씩 5년간 추가 설치하여 총 12개소 설치 가정
 - ※ '16년에 설치할 2개소의 운영비는 '1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4) 장기요양지원센터 비용요소 중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5)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횟수는 매 3년 마다 1회 실시 전제(추계기간 중 2회 실시)

나. 비용요소

- 1)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운영 :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2) 실태조사 :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다. 비용의 추계

1)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1,100,000\text{천원}$
- 연간비용 = (1개소당 장비비품 + 1개소당 리모델링) × 센터수
 - 1개소당 장비비품 : 60,000천원
 - 1개소당 리모델링 : 50,000천원
 - 센터수: 10개소(2020년까지 2개소씩 5년간 설치)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개소당 장비비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1개소당 리모델링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설치개소수	2	2	2	2	2	10
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주: 연간 인상률 미적용

2)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11,900,608\text{천원}$

○ 연간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인건비 = 1개소당 연간인건비 × 센터수 (매년 2.8% 인상률 적용)
- 운영비 = 1개소당 연간운영비 × 센터수 (매년 2.3% 인상률 적용)
- 사업비 = 1개소당 연간사업비 × 센터수 (사업비는 인상률 미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개소 운영)	2017년 (4개소 운영)	2018년 (6개소 운영)	2019년 (8개소 운영)	2020년 (10개소 운영)	합 계
계	749,772	1,531,264	2,345,766	3,194,616	4,079,190	11,900,608
인건비 (2.8%인상률적용)	459,312	944,344	1,456,176	1,995,936	2,564,780	7,420,548
운영비 (2.8%인상률적용)	130,460	266,920	409,590	558,680	714,410	2,080,060
사업비 (인상률 미적용)	160,000	320,000	480,000	640,000	800,000	2,400,000

주: 비용추계 2년차부터 최근 3년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과 운영비 상승률 반영하여 추계
(인건비 상승률 2.8%, 운영비 2.3%, 은평돌봄지원센터 실 사례 준용)

※ 은평돌봄지원센터 사례

(단위 : 천원)

관련 사업명	2015년 예산	비 고
합 계	484,886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110,000	· 장비·비품구입 및 리모델링(110,000천원)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374,886	·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 지원센터 운영(374,886천원) - 인건비 : 229,656천원 ※ 센터장(사무국장) 2급 12호봉, 사무국장 4급 11호, 교육팀장 5급 7호봉, 직업상담사 5급 7호봉, 사회복지사 5급 7호봉, 사무원 5급 3호봉 - 운영비 등(65,150천원) - 사업비(80,000천원)

주 :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 지원센터 예산은 '13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임
자료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3) 실태조사

○ 총비용 = 1회 조사비용 × 2회 = 100,000천원(5년간 2회 실시)

○ 1회 조사비용 = 연구용역 1회(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실태조사비용	50,000	-	-	50,000	-	100,000

주: 연간 인상률 미적용

[붙임] 2021년 이후 모든 자치구(25개) 설치시 까지 비용추계

1. 추계방법 및 전제

- 2021년 이후 매년 2개소씩 설치 시작하여 2027년 1개소 설치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과 전제는 앞의 비용추계와 동일

2.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70,356,98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6차년도 (2026년)	7차년도 (2027년)	8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	-	-
	소계(a)	-	-	-	-	-	-	-	-	-
세출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제6조)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	-	1,430,000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제6조, 제9조, 제10조)	5,000,918	5,961,285	6,961,851	8,004,165	9,089,909	10,220,791	11,398,579	12,139,486	68,776,984
	살타르사(제5조)	-	50,000	-	-	50,000	-	-	50,000	150,000
	소계(b)	5,220,918	6,231,285	7,181,851	8,224,165	9,359,909	10,440,791	11,508,579	12,189,486	70,356,984
총비용(b-a)		5,220,918	6,231,285	7,181,851	8,224,165	9,359,909	10,440,791	11,508,579	12,189,486	70,356,984

1)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총비용 = $\sum_{i=1}^7 (\text{연간비용})_i = 1,430,000$ 천원
- 연간비용 = (1개소당 장비비품 + 1개소당 리모델링) × 센터수
 - 1개소당 장비비품 : 60,000천원
 - 1개소당 리모델링 : 50,000천원
 - 센터수: 13개소(2026년까지 2개소씩 설치하고, 2027년은 1개소 설치)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6차년도 2026년	7차년도 2027년	합계
1개소당 장비비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1개소당 리모델링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설치개소수	2	2	2	2	2	2	1	13
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	1,430,000

주: 연간 인상률 미적용

2)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 총비용 = $\sum_{i=1}^7 (\text{연간비용})_i = 68,776,984 \text{천원}$

○ 연간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인건비 = 1개소당 연간인건비 × 센터수 (매년 2.8% 인상률 적용)

· 운영비 = 1개소당 연간운영비 × 센터수 (매년 2.3% 인상률 적용)

· 사업비 = 1개소당 연간사업비 × 센터수 (사업비는 인상률 미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6차년도 2021년 (12개소운영)	7차년도 2022년 (14개소운영)	8차년도 2023년 (16개소운영)	9차년도 2024년 (18개소운영)	10차년도 2025년 (20개소운영)	11차년도 2026년 (22개소운영)	12차년도 2027년 (24개소운영)	13차년도 2028년 (25개소운영)	합 계
인건비 (2.8%인상률적용)	3,163,908	3,794,574	4,458,096	5,155,776	5,889,040	6,659,334	7,468,152	7,997,125	44,586,005
운영비 (2.8%인상률적용)	877,010	1,046,711	1,223,755	1,408,389	1,600,869	1,801,457	2,010,427	2,142,361	12,110,979
사업비 (인상률 미적용)	960,000	1,120,000	1,280,000	1,440,000	1,600,000	1,760,000	1,920,000	2,000,000	12,080,000
계	5,000,918	5,961,285	6,961,851	8,004,165	9,089,909	10,220,791	11,398,579	12,139,486	68,776,984

주: 비용추계 2년차부터 최근 3년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과 운영비 상승률 반영하여 추계
(인건비 상승률 2.8%, 운영비 2.3%, 은평돌봄지원센터 실 사례 준용)

3) 실태조사

○ 총비용 = 1회 조사비용 × 2회 = 150,000천원 (3년에 1회 실시)

○ 1회 조사비용 = 연구용역 1회 (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실태조사비용	-	50,000	-	-	50,000	-	-	50,000	150,000

주: 연간 인상률 미적용 / 2019년에 실시하므로 3년후인 2022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